



보도	2025.2.26.(수) 조간	배포	2025.2.25.(화)
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보험계리상품감독국 보험상품감리팀	책임자	국장	이권홍	(02-3145-7240)
		담당자	팀장	김현중	(02-3145-7652)
	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 조사3팀	책임자	국장	최성호	(02-3145-8220)
		담당자	팀장	유 환	(02-3145-8233)

외화보험상품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및 소비자경보 발령

■ 소비자경보 2025 - 3호	
등급	주의 경고 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

소비자경보 내용

- 그간 금융당국은 외화보험*이 실수요 목적에 맞게 판매되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왔으나,
 - *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(예: 미국달러)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
 -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, 높은 해외 시장 금리수준 기대감 등으로 외화보험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*가 있습니다.
 - * (민원 사례) 높은 이자율과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로 자녀 학자금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였으나, 추후 확인해 보니 외화종신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니었음
- 이에 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(주의)를 발령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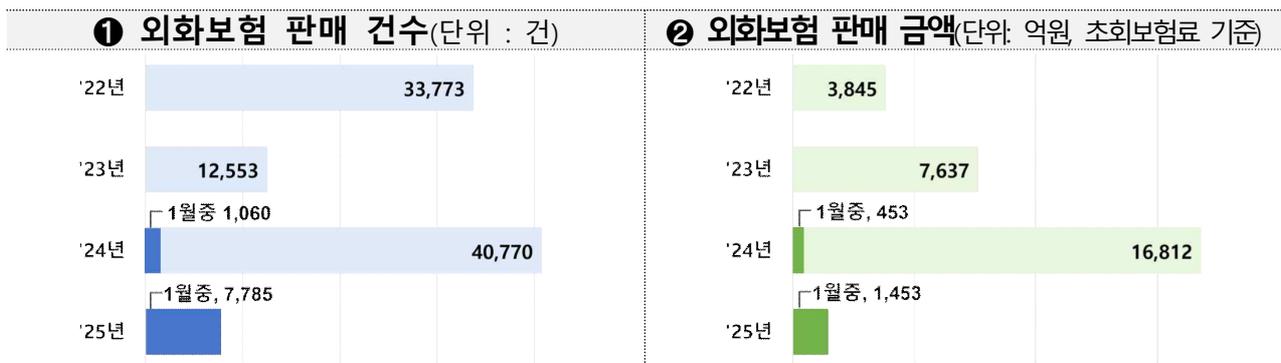
〈소비자 유의사항〉

- ① 외화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.
- ②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- ③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라도 보험금·환급금 등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.
- ④ 보험료 납입,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⑤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하신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I. 발령 배경

-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,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하여 상품 가입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
 - 이에 금융당국은 '21년 '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' ('21.12.23.)*을 발표하는 등 외화보험이 실수요 목적에 맞게 판매 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왔습니다.
 - * 투자성상품에 준하는 판매 규제 적용, 가입 시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변동 등 설명 의무 확대 포함
- 최근 환율 상승 기조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, 높은 금리 등으로 외화보험 판매 ①건수와 ②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외화보험 상품 오인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
 - 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(주의)를 발령합니다.

[참고1] 외화보험 판매 현황('22년~'25.1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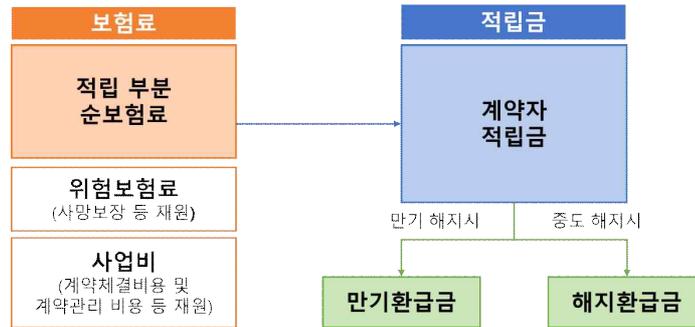
II. 소비자 유의사항

① 외화보험은 환테크*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.

- * 환율의 변동방향을 미리 예측하고, 그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 것
- 외화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,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
 -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.

- 이에 따라 외화보험은 일반적인 예·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다르게 납입한 **보험료 전액**이 **투자되지 않습니다.**
- 납입한 보험료중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와 보험 모집시 사용된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만이 적립됩니다.
- 또한,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, 해지시 **환급금**이 납입한 **원금보다 적을 가능성**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.

[참고2] 보험회사의 외화보험 업무처리 도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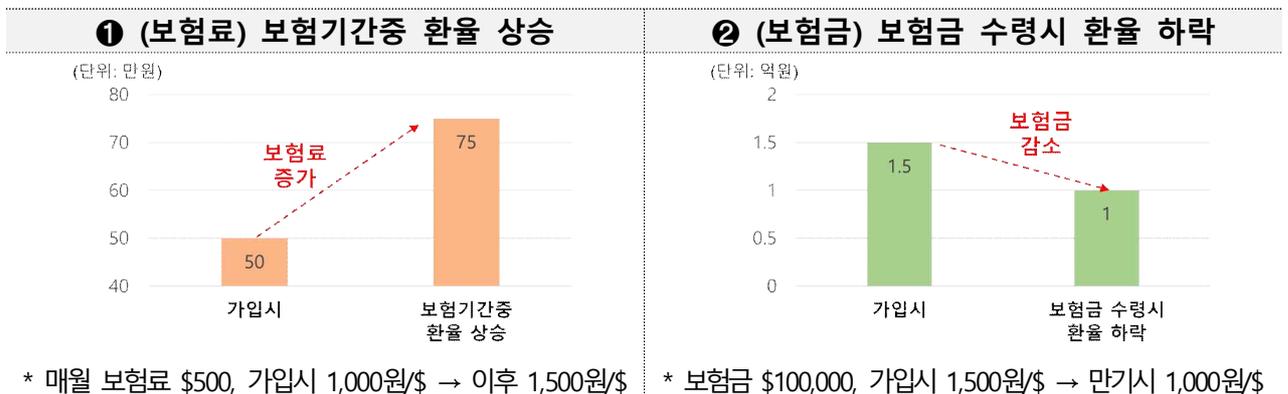


②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
-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므로, 당시 **환율**에 따라 **보험료·보험금·환급금**의 **원화가치**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즉, ①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, ②보험금·환급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·환급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*을 명심해야 합니다.

* (예) 환율이 1,450원일 때 외화보험(월납, 10년 만기) 가입 후 만기 시점 환율이 1,200원으로 하락할 경우 만기환급률은 100%로, 동일한 구조의 원화보험 가입시(121%) 대비 $\Delta 21\%p$ 낮은 수준

[참고3]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·보험금 변동 예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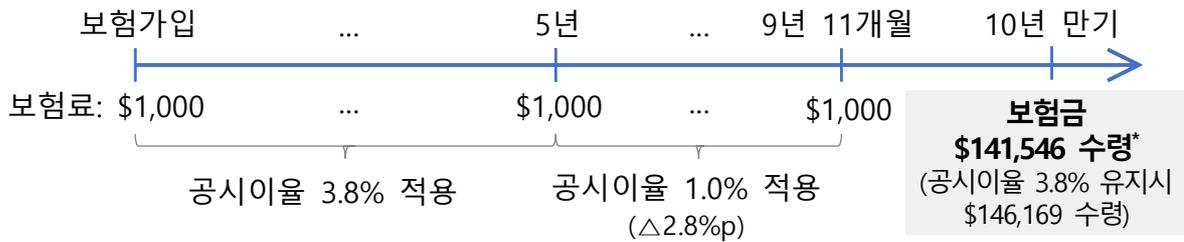


③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서도 보험금·환급금 등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.

- 외화보험중 **금리연동형 상품***은 해외채권 금리를 감안하여 적립이율(공시이율)을 결정하기 때문에 **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해약환급금**이나 **만기보험금**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**작아**질 수 있습니다.

* 계약자적립액 적용이율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,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되는 보험

[참고4] 금리변동에 따른 만기보험금 변동 예시



* 10년 내내 3.8%를 적용한 경우(\$146,169)보다 \$4,623만큼 감소(Δ3.16%)

※ 위 예시에서 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하고, 금리(공시이율) 변동만을 고려함(최저보증이율 1.0%)

④ 보험료 납입,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-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위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거나 보험금 수령을 위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야 하는데
 - 환전수수료 등으로 외화를 사는 환율(보험료 납부)은 매매기준율보다 높고 외화를 파는 환율(보험금 지급)은 매매기준율보다 낮습니다.*

* (예) '25.2.21. 기준 매매기준율 1,438.30, 달러 살 때 환율 1,463.47, 달러 팔 때 환율 1,413.13

⑤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하신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-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,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,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(참고: 품질보증해지) 보험회사의 ①약관·청약서 부분 미전달, ②약관 중요내용 미설명, ③청약서 자필서명 누락시 소비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보험료 및 경과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